권두언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文 太 俊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지금 우리는 큰 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복지시설은 과거 6·25 동란기를 기점으로 196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과 최근의 IMF 경제위기를 겪어오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행복'의 의미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고령화의 진전, 장애인의 권리 신장 등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도 과거 한정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 단순 구제에서 벗어나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대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나 관련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기본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정신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립지원, 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개방성 확보 등을 근간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1998년 12월말 현재 841개의 시설에 총 7만 7216명의 요보호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들의 수용보호와 재활 및 사회복귀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정신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립지원, 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개방성 확보 등을 근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수준은 상담이나 치료·교육 등을 도외시한 채 단순 수용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 재정 지원의 부족,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시설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부족, 시설의 지역간·종간 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기초로 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포함해 제도의 기본적인 변화를 급히 논할 필요가 있다. 본 소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재정립과 투명경영, 인권문제, 시설정비, 복지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인 경영에 있어서 시설회계와 법인회계와의 구분을 폐지하여 회계간의 자산이동을 탄력화하고, 적립금·분담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실제 시설법인의 경영규모는 매우 영세한 경우가 많다. 한 법인, 한 시설의 경우에는 경영기반이 빈약하고 인사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정보교환을 위한 사회복지법인간의 연대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수익사업 등을 포함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경영정보 공개 등의 방법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이용자 또는 입소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먼저 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되 이용자의 존엄을 중시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입소자에게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 입소자 중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중증의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민간 후견인을 선정하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시설정비 문제의 경우 먼저 시설 종내·시설 종간 복지대상자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각 지역별로 시설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을 복합시설로 전환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시설의 적절한 배치·운영을 위해 공유지의 활용이나 폐교된 학교 등 공립시설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기금·예산에 의한 보조나 융자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재확보와 양성이 필요하다. 복지분야가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매력이 있는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1999년 현재 시설종사자 급여수준은 국·공립시설 직원의 85%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시설 직원수는 1만 1859명으로 법정인원 1만 6438명의 72.1%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시설 원장과 총무의 경우 12시간 이상, 기타 보모직은 24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사명감과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보수는 일반 국·공립 복지시설 수준으로 높이고, 2교대 근무제도 도입·복지시설 종사자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시설 이용자의 인권존중과 더불어 시설종사자들의 권익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적 공기구라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하여 '개인 자선기관이다'라는 응답이 43.3%, '일간신문 또는 객관성 있는 홍보지에 사업과 예산을 알린 적이 없다'는 응답이 80%나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공적 신뢰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 주체인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운영자에 대하여는 판공비, 거마비 등 대우를 현실화하고 노후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평가는 그 기본이념을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시설 운영의 개선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두었으면 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올해 중점정책 연구과제의 하나로 시설의 적정 예산 및 지원방식 개선방안, 시설평가제 활용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재단, 시설업무 표준화를 통한 전산망 구축 및 정보 공개, 시설옴부즈맨 제도, 시설장 및 종사자 정년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보 방안, 민간복지자원의 확충 방안, 미인가 개인시설의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등 10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구, 제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는 국가발전 단계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에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 고복지-고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채택하는데 공개적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